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

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20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- 1. 제 목 :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
- 2. 적용기간 : 2017년 11월 20일 ~ 재공고 시 까지
- 3.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
- ① 사용 금지 자격 명칭(용어) :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
 - o 국어기본법 제19조(국어의 보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(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)에 따른 **한국어교원**
 - 도서관법 제6조(사서 등)에 따른 사서
 - o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(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)에 따른 **학예사**
 - 공연법 제14조(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)에 따른 무대예술(무대기계·무대 조명·무대음향)전문인
 - o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(문화예술교육사)에 따른 **문화예술교육사**
 - 관광진흥법 제13조(국외여행 인솔자), 제38조(관광종사원의 자격 등), 제48조의8
 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) 등에 규정된 국외여행인솔자, 관광통역안내사, 국내여행안내사, 호텔경영사, 호텔관리사, 호텔서비스사, 문화관광해설사
 - o 경륜경정법 제7조(선수·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)에 따라 선수, 심판

- 현행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(정의)에 따른 **체육지도자(스포츠지도사**, 건강운동관리사, 장애인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)
- 또한 2015년 1월 1일 시행이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(정의)에 따른 체육지도자 (경기지도자, 생활체육지도자)

②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

-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'국외여행인솔자·관광통역안내사· 국내여행안내사·호텔경영사·호텔관리사·호텔서비스사·문화관광해설사'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
 - ※ 관광숙박업 객실관리, 객실·식당의 접객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호텔경영사·호텔관리사·호텔 서비스사 직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
 - (예) 객실서비스기능자격증, 룸메이드, 호텔리어 등
 - ※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
 - (예) 청소년문화관광해설사, 백제문화해설사, 문화재해설사, 문화유산체험해설사, 문화관광 해설전문가 등
- o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'체육지도자'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
 - ** "대상별 스포츠(체육운동)지도사 또는 지도자", "건강운동(체육)지도사 또는 지도자"와 같이 그 직무가 국가자격과 중복되어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
 - (예) 유아체육지도사(자), 유아스포츠지도자, 어린이스포츠지도사(자), 유소년스포츠지도자, 생활체육지도사, 생활스포츠지도자, 전문체육지도사(자), 전문스포츠지도자, 노인체육지도사(자), 노인스포츠지도자, 건강운동지도사(자), 건강운동사, 장애인체육지도사(자),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등
- o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규정된 '문화예술교육사'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 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
 - ※ 문화예술교육사 업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(예) 문화예술지도사, 예술체험지도사, 창작예술지도사, 문화예술활동지도사 등

③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과 관련되는 분야

-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및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
- ④ 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